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89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액
2016년	1,910,710원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0호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피해자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군산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1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곡동 65통 ~ 66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지곡동	65	1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1동 1~2호, 상가
		2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1동 3~5호
		3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2동 1~2호
		4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3동 1~2호
		5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3동 3~5호
		6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4동 1~2호
	66	1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5동 1~2호
		2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5동 3~6호
		3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6동 1~3호
		4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6동 4~5호
		5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7동 1~3호
		6	609 지곡동 엠코타운 107동 4~5호

별표] 중 산북동 42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산북동	42	1	3646 하나리움 시티 201동 101 ~ 805호, 상가
		2	3646 하나리움 시티 201동 901 ~ 1705호
		3	3646 하나리움 시티 202동 101 ~ 1304호
		4	3646 하나리움 시티 203동 101~ 1804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이 · 통 ·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2. 통 ·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1~16	59	<생략>	수송동	1~16	59	<현행과 같음>
미장동	17~22	22	<생략>	미장동	17~22	22	<현행과 같음>
수송동	23~24	11	<생략>	수송동	23~24	11	<현행과 같음>
지곡동	25~33	37	<생략>	지곡동	25~33	37	<현행과 같음>
수송동	34~43	43	<생략>	수송동	34~43	43	<현행과 같음>
미장동	44~45	10	<생략>	미장동	44~45	10	<현행과 같음>
수송동	46~51	28	<생략>	수송동	46~51	28	<현행과 같음>
미장동	52~55	24	<생략>	미장동	52~55	24	<현행과 같음>
수송동	56~57	4	<생략>	수송동	56~57	4	<현행과 같음>
미장동	58~61	13	<생략>	미장동	58~61	13	<현행과 같음>
지곡동	62~64	10	<생략>	지곡동	62~64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산북동	1~6	38	<생략>	산북동	1~6	38	<현행과 같음>
개사동	7~8	6	<생략>	개사동	7~8	6	<현행과 같음>
산북동	9~32	86	<생략>	산북동	9~32	86	<현행과 같음>
개사동	33	2	<생략>	개사동	33	2	<현행과 같음>
산북동	34~35	12	<생략>	산북동	34~35	12	<현행과 같음>
내초동	36	3	<생략>	내초동	36	3	<현행과 같음>
산북동	37~41	22	<생략>	산북동	37~41	22	<현행과 같음>
			<신설>		42	1	3646 하나리움 시티 201동 101~805호, 상가
			<신설>			2	3646 하나리움 시티 201동 901 ~ 1705호
			<신설>			3	3646 하나리움 시티 202동 101 ~ 1304호
			<신설>			4	3646 하나리움 시티 203동 101 ~ 1804호
동계	41	169			42	173	
동총계	789	2,583		동총계	79	2,599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2호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를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로,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 다만, 다음 각호의1 에”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장이 5급이하”를 “기관장이 5급 이하”로, “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를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을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소·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의 제목“(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를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휘·감독의”를 “지휘·감독의”로, “관련규정에 의하여”를 “관련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을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단순업무”를 “단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당해”를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으로,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를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로, “이를 공고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 이 경우”를 “. 이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기관에 2 이상”을 “해당 기관에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되, 협의회의를”를 “의하되, 협의회의”로,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를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설립증 이라”를 “설립증”이라”로, “. 다

만,”을 “. 다만,”으로, “등 첨부서류”를 “등 첨부서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을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제출한 때에”를 “제출하였을 때”로 하며, “도달한”을 “도달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으로, “제명의결”을 “제명의결”로, “의결전”을 “의결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으로,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제8조제5항 본문 중 “잔여임기”를 “남은 임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을 “.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이하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을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으로, “및 회원명부등”을 “및 회원명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 사실과”를 “, 사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단서 중 “이를 공개”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이를 각각”을 “각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이내에 이를”을 “3일 이내에”로,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을 “대해서는 반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근무시간중”을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는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
· 소 · 와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
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
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
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
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
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소·과 및 담
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
무원)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
-----각 호 -----.

1. 지휘·감독의 -----

-----관련 규정
에 따라 -----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
 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
 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
 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
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
 다)

4. ~ 7. (생략)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
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자료정리·타
자 등 -----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
 -----단순
업무 -----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
당 -----

 -----또는 업무 중 협의회
에 -----

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회의 설립)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
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
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
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
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준비대표자를 통하
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회의 대
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규정과 협회위
원명부, 협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
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공고하여야 -. 이
경우-----
-----.

제4조(협회의 설립) ① -----

-----7일 이상 -----
-----.

② -----해당 기관
에 들 이상 -----

-----.

③ -----

-----의하되, 협회의 -----

-----제5조-----
-----.

④ -----제3항에 따
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경우
에는 7일 이내 -----

설립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 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

----"설립증"이라 -----

----- . 다만, -----

-----등 첨부서류-----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규정) -----

---각 호 -----

----- .

1. ~ 10.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

회 규정 -----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협

의회 규정-----

-----제출

하였을 때 ----- . --

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
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 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
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
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
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
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
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
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
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

도달하였을 -----

-.

④ -----

-----해당-----

-----.

⑤ 제4항에 따른 -----

-----.

⑥ -----

-----해당-----
-----.

-----해당-----
-----.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
여)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 -----

-----제명의결 -----

-----의결 전 -----

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협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 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생략)

⑤ 협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

-----.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해당 -----
-----.

② -----

-----협회 규정-----
-----.

③ -----

-----각 호-----
-----.

1. 협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

--1명 이상-----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
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현행과 같음)

⑤ -----

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④ (생략)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남은 임기 --. 다
만, 남은 임기가 3월 이하인-----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
-----소속공무원
중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 -----
-----및 회원명부 등
-----.

② 제1항에 따라 -----
-----,
사실과 -----

-----.

③ -----제2항에 따
른 -----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2조(협회의 의무)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

-----공개-----
-----.

⑥ -----
사무기록 -----

-----.

⑦ -----

-----각 호-----
-----각각-----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협회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3일 이내-----

-----대해서는 반기별
로-----
-----.

③ -----제2항에 따
라 통보받은 경우-----

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
 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
 한)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
 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
 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
 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
 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근무시간 중-----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3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군산시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4호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5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정보공개수수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생략)</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행정정보공개수수료</u>는 50%를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u>정보공개수수료</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가. 징수 기준

○ 신규 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갱신) 허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 요율을 적용하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적용한다.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나. 요율표

광고물의 종류		기준	수수료	표시기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비행선	400,000원	3년 이내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4,000원	30일 이내
현 수 막	현 수 막	10㎡ 이하	3,000원	15일 이내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현수막 게시시설	10㎡ 이하	7,000원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수 수 료	표 시 기 간
가 로 형 간 판	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면적 6㎡ 이하	3,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 면의 4층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면적 6㎡ 이하	30,000원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세 로 형 간 판		면적 6㎡ 이하	2,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돌 출 간 판		면적 6㎡ 이하	15,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 국 표지 등(개당)	4,000원	
공 연 간 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2년 이내
옥 상 간 판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지 주 이 용 간 판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애 드 별 른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60일 이내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3년 이내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벽 보		50매당	3,000원	15일 이내
전 단		1,000매당	3,000원	15일 이내
공 공 시 설 물 이 용 광 고 물		연면적 1㎡ 이하	3,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1개당 5㎡ 미만	9,000원	3년 이내
		1개당 5㎡ 이상	10,000원	

[별표 2]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원	
② 중소기업자	1통	500원	
③ 광업, 공업, 상업	1통	200원	
④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② 생산실적	1통	300원	
③ 수출실적	1통	300원	
④ 납품실적	1통	300원	
⑤ 건물사용	1통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⑦ 보세 물건에 관한 관찰(재교부)	1통	300원	
⑧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⑨ 시설 보유 증명	1통	300원	
⑩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 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 문서	1통	300원	지적 관계 제외
·토지 도면	1통	300원	
·건물 도면	1통	300원	
③ 공부 열람			
·기본료	1시간당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④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5,0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3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단, 도시계획도
④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필지	300원	
⑤ 도시계획 증명(부지증명)	1필지	700원	
⑥ 위 ④ 및 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건	200원	
⑦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⑧ 환지 예정지에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원	
⑨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⑩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원	
⑪ 토지대금 완납 증명	1필지	300원	
⑫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1필지	300원	
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타시군 2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	1주택	800원	<1기준년도 1호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호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필지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필지	300원	
③ 원천징수금 제증명	1필지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필지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⑥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⑦ 면세용도 물품 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기타 제 증명			
① 수산업에 대한 증명	1통	300원	
② 소방시설 완비 증명	1통	500원	
③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기준년도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필지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1필지	800원	
(인가, 허가, 신고, 건축 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1건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② 토지등급 성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원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⑦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⑧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5,000원	
2. 산림 관계			
①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수산 관계			
①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2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1건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⑦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1건	10,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점용문 1건	1/1,000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사비의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⑤ 하천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변경허가	1건	500원	
⑥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	1건	1,000원	
⑦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건	1,000원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⑧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⑨ 용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⑩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 신청	1건	500원	
⑪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⑫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⑬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⑭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⑮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⑯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⑨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 ()는
⑩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읍면지역임
⑪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원)	※ ()는
⑫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원)	읍면지역임
⑬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⑭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⑮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⑯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⑰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7. 문화관광체육관계			
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②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 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연습장업 등록	1건	5,000원	
③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④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⑤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⑦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⑧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⑨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⑩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⑫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⑮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8. 해양수산관계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4,000원	
- 어업권의 분할허가신청	1건	2,500원	
- 어업권의 변경허가신청	1건	3,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 생산 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원	
-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원	
- 육상·해수양식 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 종묘생산 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 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건	3,000원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2,000원	
⑬ 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8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⑯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500원	
⑰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건	2,500원	
⑱ 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	1건	1,500원	
⑲ 어업신고	1건	1,500원	
⑳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㉑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2,000원	
㉒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㉓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3,000원	
㉔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㉕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	1건	3,000원	
㉖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1건	1,500원	
㉗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㉘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㉙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⑩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8,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⑪ 내수면어업법 19조			
- 내수면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⑫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 낚시어선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⑬ 관리선사용자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⑭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⑮ 어업면허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⑯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⑰ 면허사항(주소, 성명, 대표자, 선박명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⑱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1건	1,000원	
⑲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⑳ 한시어업 허가 신청	1건	2,000원	
㉑ 한시어업 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㉒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원	
㉓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㉔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㉕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㉖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㉗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㉘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㉙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원	
㉚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원	
㉛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㉜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환경 관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p>·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p>	<p>○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6호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를 “「아동복지법」에 따라”로,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을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를 “아동이란 법 제3조 제1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을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를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로, “시행규칙 제10조”를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5조 중 제1호는 삭제하고, 제1호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호는 삭제하고, 제2호를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아동”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호는 삭제하고, 제1호 내용을 제4호로 한다.(호번호 이동)

제5조 중 제5호는 삭제한다.

제5조 중 제6호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제5호 “그 밖에 센터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호는 삭제하고, 제1호를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호는 삭제한다.

제7조 중 제3호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을 제2호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로 한다.

제7조 중 제4호는 삭제한다.

제7조 중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한다.(호 번호 이동)

제8조에 제6호 “연합단체 행사지원비”를 신설한다.

제8조에 제2항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대상)를 삭제하고,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아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제2항 중 “15인”을 “10인”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호는 삭제한다.

제11조제2호 중 “차등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호번호 이동)

제11조 중 제3호를 제1호로 한다.(호번호 이동)

제11조제4호 중 “행·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한다.(호번호 이동)

제11조 중 제5호는 삭제한다.

제11조에 제4호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을 신설한다.

제11조에 제5호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신설한다.

제15조 중 제1항은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를 “신고된 센터의”로 하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항번호 이동)

제15조제3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항번호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아동복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u>설치</u>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아동복지법</u>」(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u>설치·신고</u>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u>제24조의</u>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u>제23조에</u>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삭 제> 6.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p>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u> 2. <u>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아동</u> 3.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u>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u> 5. <u>그 밖에 센터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u>
<p>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삭 제>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삭 제>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8.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u> <삭 제> 2. <u>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u> <삭 제>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6.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p><신설></p> <p><신설></p>	<p>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u>연합단체 행사지원비</u> <p>②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u>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업비의 지원대상)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 제></p>	<p><u>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u> <u>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u> <u>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u> <u>4. 아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u>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p>①군산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삭 제> 2. 운영비 <u>차등지원</u>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센터 사업의 <u>행·재정적</u> 지원 및 발전 방안 5. <u>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u><삭 제>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 삭 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u>행정적·재정적</u>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u>지원</u>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p>< 삭 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신설)</u> 5. <u>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신설)</u>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삭제></p> <p>②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지도·감독)</p> <p><삭제></p> <p>①시장은 <u>신고된 센터의</u>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센터의 장은 <u>제1항</u>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7호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의원정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전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제6조(기능)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중 3분의 1이상이 결원시는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의회의 사무 및 역할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8호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사항 및 다음 각 호를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 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 1항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

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어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어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시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7조제3항에 의한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 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 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⑤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99호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본청 및 군산시 행정기관의 청사
2. 군산시장 및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점의 경우에는 15㎡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사전공고) 군산시 해당시설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시보 또는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과 허가·계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6.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군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 매점 □ 자동판매기		군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 청 구 분 (해당란√ 표시)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및 유족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및 미그유족 또는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기 타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대상자	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사 항	설치계약 대상공공 시설명				
	내 용	매점	개소(m ²)		
		자동판매기	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		
<p>「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군 산 시 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우선허가 증명서류 1부.</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0호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

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되, 법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군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내용 및 범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폐수 등의 무단투기·유출 예방활동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4. 부당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 구성·운영
5. 시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감독사항 준수
6.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대피명령의 준수

제8조(위탁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에서 고시한 해수욕장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을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9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시설별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③ 사용료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군산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지
2. 수탁자의 지정·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수욕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군산경찰서장
3.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4. 군산소방서장
5. 군산지역기상서비스센터장
6.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7. 시 소속 공무원 : 경제항만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④ 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호에서

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20일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 편의 시설 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1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제6호로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 의 창업·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 지원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제7호로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8조를 전부 개정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협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 공동물류 창고에 대한 임대료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p> <p>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p> <p>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u>」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p> <p>2. (좌동)</p> <p>3. (좌동)</p>

현 행	개 정 안
<p>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p> <p>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p> <p>(신설)</p> <p>(신설)</p>	<p>4. (좌동)</p> <p>5. (좌동)</p> <p>6.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p> <p>7.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제8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위탁할 수 있다.</p>	<p>제8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p> <p>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 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협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 공동물류 창고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현 행	개 정 안
	<p>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2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삭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 반환은 반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예치금"이란 월 사용료 등 12개월분을 대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삭제></p>
<p>제10조(예치금) ① <u>군산시장은 사용자로서 예치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예치금은 사용면적을 감안하여 군산시장이 결정 고시한다.</u></p> <p>③ <u>시장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자로서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예치금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7조에 배상책임 및 제16조 및 제18조의 부담 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u></p>	<p>제10조 <삭제></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3호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와 지역 내 자동차·기계 산업의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발굴하는 포럼 사업
2.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4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시림등 조성·관리)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는 법에 따른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기준) 법에서 정하는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법에 따른다.

제5조(식재 기준 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산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의 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간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폭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키큰나무(교목)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다만 현지여건 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 보전과 교통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6.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키큰나무(교목)는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활착율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키큰나무(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균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키작은나무(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한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균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키큰나무, 키작은나무,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옮겨심기, 제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어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방근시설 등의 확대 필요성 검토
5. 그 밖에 관련 법령·조례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 실시 전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뀌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별표3 기준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제3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한다.
-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에 따라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의 발생신고
3.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4. 가로수 및 녹지대 내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
 5.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제13조(가로수 관리대장의 작성 등)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 2호에 의한 가로수 노선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다만 노선의 여건에 따라 변경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도로별 가로수 식재 규격(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4cm이상, 근원경 16cm이상	다만 도로폭 및 보도폭의 여건에 따라 변경조정 시행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미만	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14cm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미만	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2cm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6cm이상, 근원경 8cm이상	

【별표 2】

가지치기의 대상 및 기준(제8조 관련)

1. 대상	<p>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p> <p>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p> <p>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p> <p>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p> <p>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p> <p>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p> <p>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p> <p>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p> <p>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p>
2. 시기 및 횟수	<p>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p> <p>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p> <p>다. 기타 주의사항</p> <p>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p> <p>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p> <p>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p> <p>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p>
3. 방법	<p>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p> <p>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p> <p>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p> <p>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p> <p>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p> <p>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p> <p>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p> <p>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p> <p>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p> <p>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p> <p>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p> <p>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p> <p>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p>
4. 절단면의 처리	<p>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p>

[별표 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0조제6항 관련)

<p>△ 피해발생의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p>△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제거비
<p>○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p> <p>○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p>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0조제4항 관련)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p>군산시 가로수조성·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군 산 시 장 귀 하</p>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p>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13조 관련)

도 로 노선명	구 간				시 점						
					중 점						
도 로 종 류	종 류		도로폭		차 도						
	좌 우 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 로 수 조 성 현 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 업 비				시 공 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 형
가 로 수 변 동 및 관 리 현 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 리 내 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 로 수 관 리 시 설 현 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5호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4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로 한
다.

제6조 중“ ④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면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
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을 감면한다,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

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을 신설한다.

제7조 중“도로법 제84조”을“「도로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점용료의 분할납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제10조 중“도로법 제38조”을“「도로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1·2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01></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 6 6 조 에 ----- ----- ----- ----- ----- ----- ----- ----- ----- -----</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05.01></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 ----- ----- ----- ----- ----- ----- ----- -----</p>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③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도로법 시
 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
 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
 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
 로 2 이상의 관을 병행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
 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2.
 05.01>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③ 별표 1
 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도로법
 시 행 령」 제 6 9 조 제 1 항 의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면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 6 6 조 제 2 항 의

<p>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의</p> <p>-----</p> <p>-----</p> <p>-----</p> <p>-----</p> <p>-----</p> <p>-----</p> <p>-----</p> <p>-----</p> <p>-----</p>
---	---

[별표 1]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 공중 전화, 송전 탑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 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 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 관 · 하수도 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4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8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2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1,650
		지름 0.8m초과 1.0m이하			2,050
		지름 1.0m초과 2.0m이하			3,1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5,200
		지름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 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6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1,2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8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2,500
		지름 0.8m초과 1.0m이하			3,100
		지름 1.0m초과 2.0m이하			4,6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7,750
		지름 3.0m초과			10,850
3. 주유소· 주 차장· 여객자 동차터미널· 화 물터미널· 자동 차 수리소· 승 강대· 화물적치 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 입 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면적	기간단위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 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 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제1 호에 따라 설 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 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 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광고탑·광 고판·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 판·간판(돌 출간판을 제 외한다)	일시설치한 것 (1개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41,400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20,7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의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4.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 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등이 포함된다.

6. 위 표의 제2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기본산정방식〉

계산방법 : i)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한 후
ii) 이와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환산하여 구한다.

계 산 식 : i)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면적(A)은
 $A(\text{cm}^2) = a \times b$
ii) 위 직사각형과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D)는
 $D(\text{cm}) = 2 \times \sqrt{A(\text{cm}^2)}$ 로 계산하며 소숫점이하 버린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제1항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6호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7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5호 다목 중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를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과 구조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한다.

제4조제3항 “별지 제1호 심의신청서 (당초)”를 “별지 제1호 심의신청서 (변경)”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3년 이내로”를 “2년으로”로 한다.

제11조 중 “업무담당 계장이”를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로 한다.

제14조 중 “5명 이상 7명 이내로”를 “5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제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는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3조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7조제3항의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한다.

제32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구역
-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 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1조 제1항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항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에 한함

제45조 제2항 중 “냉각탑,공탑,물탱크,변전실”을 “냉각탑,물탱크,변전실,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심의 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건축심의신청서(당초)					
연 번			심의신청내용		
건축위치					
건축주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건폐율(%)		주 용 도
	구 조		용적율(%)		부속용도
	건축종별	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최고높이		주거용인 경우	동 세 대	
설 계 자	주 소			성 명	
	사무소명			연락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p>건축법 제4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건축심의 도면</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p> <p>군 산 시 장 귀 하</p>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심의 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건축심의 신청서 (변경)						
연 번			심의신청내용			
건축위치						
건축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건폐율(%)		주 용 도	
	구 조		용적율(%)		부속용도	
	건축종별	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최고높이		주거용인 경우	동 세대		
설 계 자	주 소			성 명		
	사무소명			연락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p>건축법 제4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붙임 건축심의 도면</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p> <p>군 산 시 장 귀 하</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과 「<u>건축법 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과 「<u>건축법 시행규칙</u>」 및 「<u>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건축심의대상)</p> <p>① (생략)</p> <p>1~4. (생략)</p> <p>5. 가~나 (생략)</p> <p>다. <u>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u>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심의기준·도면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장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p>	<p>제4조(건축심의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과 구조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안)</u>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심의기준·도면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장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p>

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 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

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 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생략)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20조(적용의 완화) ①~④(생략)

<신설>

나 업무대행자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적용의 완화) ①~④(현행과 같음)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③ (생략)

<신 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의1(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 1. 다중이용 건축물
-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신 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 의 건축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현행과 같음)

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신 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

<삭 제>

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의 너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접한 부분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86조제5항의 공원의 경우에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략)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략)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 제)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다만, 완화할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한다.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8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전용면적 85㎡이하”를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은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 (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u>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u>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은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09호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적립금”을 “감채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잉여금에서 전 1, 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p> <p>1. (생략)</p> <p>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u>적립금</u></p> <p>3. <u>1, 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부금</u></p> <p>4. <u>잉여금에서 전 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를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u></p>	<p>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감채적립금</u></p> <p>3. <u>잉여금에서 전 1, 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u></p> <p><u><삭 제></u></p>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00호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의”로, “또는 폐지(이하 “개폐”)”를 “또는 폐지(이하 “개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질의”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결과”를 “결과(규제심사 등)”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료(규제심사 등)”를 “자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를 “제7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제8조제3항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목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 의”를 “호의”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안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붙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2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고서식”을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을 “도지사로부터 공포 절차 추진 지시를 통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로부터 규칙”을 “도지사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입법"이란 <u>자치법규</u>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개폐"라 한다)를 말한다.</p> <p>3. ~ 5. (생략)</p> <p>6. "<u>질의</u>"란 <u>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p> <p>7.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자치법규의</u> ---- ---- 또는 폐지(이하 "<u>개폐</u>"--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질의</u>"란 <u>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u>----- ----- ----- ----- -----.</p> <p>7. (현행과 같음)</p>
<p>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u>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p>	<p>제5조(방침결정) ----- ----- ----- ----- ---- <u>군산시장(이하 "시장"</u>--- -----.</p>

입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제7조(입법안 작성) ①·② (생략)

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 6.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 7. (생략)
-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규제심사 등)

제8조(제출 및 심사) ① 주관과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결과서
 - 2. (생략)
- <신설>

제7조(입법안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 결과 (규제심사 등)
- <삭제>
- 7. (현행과 같음)
 - 8. ----- 자료

제8조(제출 및 심사) ① -----
-- 제7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

-----.

- <삭제>
- 2. (현행과 같음)
 - 3.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신 설>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생 략)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 나. (생 략)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생 략)

제9조(반려 등)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 6. (생 략)

제18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넷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현행 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9조(반려 등)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운영) ① -----

----- 수요일-----

재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제20조(의안제출) ①·② (생략)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② (생략)

③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의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조례안 내용의 위법·부당여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례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심의회의 기능) -----
----- 호의 -----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안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붙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일 -----
-----.

하여야 한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 (별지 제12호 서식)

2. (생략)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담당 부서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포안 작성) ① 심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 2. (생략)

② 도지사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 3. (생략)

④ -----

----- 전라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1.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2. (현행과 같음)

⑤ -----

-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

제25조(공포안 작성) ① 도지사로부터 공포 절차 추진 지시를 통
지받은 -----

-----.

1. · 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로부터 -----

-----.

1.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제12조 관련)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이 유				
<p>「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input type="checkbox"/>제정 <input type="checkbox"/>개정 <input type="checkbox"/>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첨부서류 : 조례안 및 그 밖의 관련자료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p>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제12조 관련)			
성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및 폐기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제12조 관련)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 임 인	성 명	(서명날인)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12조 관련)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 입 인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군 산 시 장 인</p>				
<p>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p>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 관련)

()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

청구인명부 (표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군산시 ○○○○ 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임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구인명부 (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주소(거소·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무인(拇印)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취소 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서(제14조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대 상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조례안(제정·개정·폐지)

제안자	시·도지사(시·구청장·군수)(), 의회의원(),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규 제 심 사 결 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의결(년 월 일)		
의회 의결일	년 월 일	이 송 일	년 월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재 의 요구 기 한	년 월 일
근거 법령	「 법」 제 조		
소관 부서	○○○도 ○○○과		
관련 중앙 행정 기관	○○○부 ○○○과		
제정·개폐 사유	○		
주요 내용	○ (안 제○조) ○ (안 제○조) ○ (안 제○조)		
지자체 검토의견	○		
중앙부처 질의	○		
언론보도 등 동향	○		

[별지 제19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의안 번호	제 - 호
----------	-------

심 의 안 건	군산시 ○○○○○조례(규칙)안
심의요구내용	붙임 조례(규칙)안에 대한 “가”, “부” 심의
사 유	○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 하고자 함(조례의 경우) ○ 규칙 공포 전에 사전 심의 하고자 함(규칙의 경우)
관계 법조문 및 적용사유	○ 000법 제00조 ○ 000법 시행령 제00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과장 ○○○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귀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01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군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시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제9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 ③ 부과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10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 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매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시세에 대한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시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 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시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시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64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2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 목	년도 / 기분	납 세 의 무 자		송 달 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 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 type="checkbox"/> 징수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 type="checkbox"/> 감액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결정결의서</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군) 읍·면(동) 외 번지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인)
				등재 환급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내 역 서

구분 읍면동	과세표준	세율	징수(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 세	가산금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세입(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발의일 :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결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 []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동)

과 세 번 호	세 목	본 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증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 납 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납세자(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2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 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4호 서식]

(앞 면)

지방세 체납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 호				성 명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독 축		체납세액						합 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체납자 주소지 약도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뒷 면)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u>주 거 확 인</u>			<u>재 산 확 인</u>	
1. 납세자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극빈자 확인</u>			<u>재조사 확인</u>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기 타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5호 서식]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연 도 기 분 연 도 기 분 연 도 기 분	지방세환급 내역						결 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 재		지급필통지 사항		
	세 목 계 호	지방세환 급금		환급대 상자		과 오 사 유 년 월 일	담 당 자	담 당 장	지방세환급가산금			구 좌 경 정 호	명 령 번 호	지 급 명 령 액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일 자	수 령 자	대 조 자 인
		본 세 계	가 산 금	성 명	주 소				지 방 세 환 급 금	지 방 세 환 급 가 산 금	계 합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구 분	지방세환 급금	총 당 액	구좌 경정 액	지급명령 액	반 송 분 액	실지급명령 액	지급및통 지액	차인미 지급액	결 재				
	결의액			①		③ = ① - ②			④	③ - ④	담 당 자	담 당	과 장
전월까지 누계													
당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용할 수 있음

[별지 제17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인)
		정	리	부	등	재	(인)
담	당	총	당	통	지	서	(인)
		발	부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 서식]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채 권 자	성 명		납세자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 납 자	성 명		납세자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 분 금 액	금	원정		
예 탁 장 소				
예 탁 일 자	년	월	일	
<p>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시장·군수 (인)</p>				
구비서류: 배분계산서등본 통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 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납세자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또는 거 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 각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 관계되는국세의금액						
채 권 자						
성 명	주 소 또는 거 소			채 권 금 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 위	성 명	납세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 액	교 부 일	비 고
기 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div>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0호 서식 (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					
담당자	담당	과 장	국 장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 : 확인자 (과 장) : :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0호 서식 (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서

○ 개인 납세자

번호	성명	직업(업종)	총체납액	납기	체납요지
	상호	연령	세목		체납자주소
1					
2					

※ 상기 개인 납세자 등 ○명

○ 법인 납세자

번호	법인명	업종	총체납액	납기	법인소재지
	대표자	연령	세목	체납요지	대표자주소
1					
2					

※ 상기 법인 납세자 등 ○개 법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 증빙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02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2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3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4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5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6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7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8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9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0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1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14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1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16	건축물조사표	
17	주택조사표	
18	선박조사표	
19	항공기조사표	
20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21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22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23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24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신고서	
25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26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27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28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29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〇〇시)

접수 번호	신고 일자	성명· 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

과세 번호	성명 (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세액	산출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시)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〇〇시)

접수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과세 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 표준	납부 세액	일자	세목	과세 표준	납부 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미색모조 80g/m²)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 율	세 액	납 부 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 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시)											
접수 번호	신고 일자	성명 (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 소득세	납부 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0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시)

일련 번호	납세 번호	납부 구분	성명(법인명)	전화 번호	귀속 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 금액	수납일
	주민(법인) 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부과일	납기일	자료 구분	비 고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 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일련번호	
------	--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		(사업장명)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재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 무 서	세 율	본 세	가 산 세	계	결 의 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5호서식]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울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구 분	소재지		구조	용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고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공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 자			현 소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공 부					조사자 직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9호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p>조사년월일</p> <p>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p> <p> 직 성명 (서명또는 인)</p>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00시)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 (법인명)	상호	납세 주소	과세 표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담당 자	담당	과장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 산)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합 계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담당자	담당	과장

(단위 : 원)

신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분납 신청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세목	과세대상	과세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 세액	납기내 세액	분납 세액	분납기한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3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담당자	담당	과:

(00 시)

연번	물건소재지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신고사항		직권지정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신고사유	통지일	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소재지)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연세액 신고 분할납부 신고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 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 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시)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 소		자동차 번호	연세액	제1기분		제2기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납부 세액	납부일	납부 세액	납부일	담당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시)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 소		자동차 번호	연세액	10% 공제	납부 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7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시)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 소		자동차 번호	근거 법령	신고(직권) 비과세	비과세 사유	비과세 세액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시)

접 수 번 호	납 세 의 무 자					과 세 표 준			수 입 신 고 수리일	주행세 신 고 납부일	주행세 신고일	주행세 납부일	송금일	결 재		
	주 소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계	회 발 유	경 유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03호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시장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 사업
2. 치매관리 교육·홍보 등 치매 인식개선 사업
3. 치매를 조기에 발견 예방 할 수 있는 조기 검진사업
4.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예방 등록관리 사업
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
6. 치매 통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7. 기타 치매 관리 및 서비스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신청서류를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위탁업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등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위탁운영 협약 등) ① 수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산시와 수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운영 규정) ① 센터를 위탁 운영시 수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군산시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또는 검사)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업무의 민간 위탁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검사·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수탁시 보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 시장은 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 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연락처	063-460-3223

● 전라북도 군산시공고 제2015-1905호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해외사무소 파견 주재관의 근무기간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명칭변경(임기제공무원)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전임계약직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6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 해외 파견 주재관의 근무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8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새만금국제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tchlsoeun@korea.kr
- 2) 주소 : (우)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3) 팩스 : 063-452-8158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국제협력과(전화 : 063-454-26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지방임기제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선발 임용된 지방임기제공무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무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선발) ① 주재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선발하거나 소속 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하되, 그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 선발한다.</p> <p>② 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채용 선발된 사람</p> <p>2. ~ 4. (생략)</p>	<p>제6조(선발) ① -----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p> <p>-----</p> <p>-----</p> <p>-----</p> <p>-----</p> <p>-----</p> <p>② -----</p> <p>-----</p> <p>-----</p> <p>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선발 임용된 지방임기제공무원</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 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외사무소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할 때 1회에만 2년의 범위에서 또는 지방전임계약직의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상의 채용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 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무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p>

군산시 공고 제2015-1922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호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 12. 30 일부개정되어 2015. 7. 1.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례(규칙)정비가 요구되며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결정되어 정비 필요성 대두
- 기금 일몰제도에 따른 존속기한 마련 및 용자 한도액 증액 등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문 일괄 개정 (수급자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2호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50%이하)

○ 유사·중복사업 폐지

- 자활기금 용자 대상 중 상가·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중앙정부사업인 저소득층생업자금 대상과 유사·중복

○ 기금 일몰제도 이행을 위한 존속기간 신설

○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용자 한도액 상향

구 분	현 행	조정 (안)	비 고
사 업 자 금	7천만원	1억원	
전세점포임대	7천만원	1억원	

3. 입법예고기간 : 2015. 12. 16 ~ 2016. 1. 5 (21일간)

4. 의견제출

-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에 FAX 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psy1115@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454-3162, 팩스 454-3139)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자활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의 출연금
2. 도 및 시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제4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전세점포임대사업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자활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기업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때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 라. 그 밖의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 마.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자활 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대 등을 위한 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3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용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약정된 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복지계장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존속기간)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제16조(중복지원의금지) 이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용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1925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호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4. 8.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수정
 - 자활기금신청서, 재정보증서, 자활기금 관리대장

3. 입법예고기간 : 2015. 12. 16 ~ 2016. 1. 5 (21일간)

4. 의견제출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복지지원과)에 FAX 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psy1115@ 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454-3162, 팩스 454-3139)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이규칙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① 이 규칙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3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보증으로 하며, 연대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융자금상환) 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매월 또는 반기로 분할 납부하여야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매월 말일 또는 6월30일과 12월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해년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매월 말일로 납부 한다.

제4조(채납자 조치)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독촉장)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

인에 대하여 변상·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감면조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과 보증인등 (이하“채무자 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동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5조1항에 따른“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재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2.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이하“채무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채무자 등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③ 채무자등이 융자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별지4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 관리) ① 시장·읍·면·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기금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담당과장이 하고,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읍·면·동장이 관리한다.

③ 읍·면·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려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활 기 금 용 자 신 청 서

- 1. 주 소 : 군산시 읍·면 로 (동,)
- 2.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집 (핸 드 폰)
- 3. 용자신청금액 :
- 4. 상환방법 및 기간 : 반기별, 거치 년균등상환(연 % 연체시 %)
- 5. 용자신청 사업계획
 - 가. 사 업 명 :
 - 나. 사 업 장 위 치 :
 - 다. 사 업 실 시 기 간 :
 - 라. 재 원 계 획 :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용 자	자부담	자부담방법	비 고

※ 사업비 산출 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귀시가 정하는 제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자금 용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추 천 인

읍면동장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용자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자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아래의 보증인이 채무 이행할 것을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전화번호 :

보증인 지방세액 확인			
재산세 (주택, 건축물)	원	확 인 자	직 :
재산세 (토지)	원	확 인 자	성명 :

보증인 인감 확인			
보증인		확 인 자	
인 감		확 인 자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자 활 기 금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용자일 :						
용자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명				만 기 일		. .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상 환 내 역										
회 수	상 환 일 자	상 환 금			상환 잔액	납부 일자	연체이자(년 %)			비 고
		원금	이자	계			기간	일수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용 자 금	구 분		용 자 일 시	
	용자원금		연 체 이 자	
감면신청금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p>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군산시장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군산시 공고 제2015-1960호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의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내실있는 양성평등기금 운용을 위하여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부호를 삽입하고 기금명을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게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전부개정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조항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단체나 법인의 범위를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을 인용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
- 다.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3조) 및 변경된 조례 반영(안 제9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4일 까지 아래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가족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여성정책계)

○ 전화 : 063)454-3214, FAX : 452-9477, 전자우편 : dooji12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 454-32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여성발전기금”을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을 “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으로, “(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조에서”를 “이 조에서”로 한다.

제9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여성발전기금</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군산시 ----- 조례</u>」에 따라 <u>군산시양성평등기금</u>-----.</p>
<p>제2조(지원대상) <u>군산시양성평등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u>의 지원대상은 「<u>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u>」(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p> <p>1. <u>군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u></p> <p>2. (생략)</p>	<p>제2조(지원대상) <u>군산시양성평등 기금(이하 "기금"</u>----- -----(이하 "조례"라 한다) 제42 조----- -----.</p> <p>1. 「<u>양성평등기본법</u>」 제51조에 따른 <u>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u>이조에서</u>"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군산시장</u>(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 <u>이 조에서</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③ (생략)</p> <p>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u>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u>」 및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준용) ----- ----- ---- 「<u>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u>」 ----- -----.</p>
---	--

군산시 공고 제2015-1974호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와 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정함(안 제3조)
- 나. 분석평가결과를 임의규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다.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상위법과 자치법규가 통일성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반영 함(안 제11조, 제12조)
- 라. 법 제13조2 신설과 관련하여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9조)
- 마. 분석평가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이 아닌 분석평가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 조항 수정(제20조~24조)

사. 그 밖에 일부사항 수정(안 제2조, 제6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가족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여성정책계)

○ 전화 : 063)454-3214, FAX : 452-9477, 전자우편 : dooji12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 454-32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산시장(이하”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특정 분석평가 반영 등)”을 “(특정성별분석평가 반영 등)”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특정 분석평가”를 “특정성별분석평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본문 중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를 “법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로,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조항 삭제>

제12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청 소년과장으로 한다.

제1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모든”을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제15조”를 “법제15조”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17조) 중 “분석평가기관”을 “법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u>군산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군산 시장(이하 "시장"-----</u> -----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u>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u> -----.</p>
<p><신 설></p>	<p>③ <u>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제12조(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군산시 여성발전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법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단서 삭제>

② ----- .

1.·2. (현행과 같음)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20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분석평가 교육) ① -----
-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 법
제15조-----

제13조 (생략)

<신설>

제14조(분석평가 교육) ① 시장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15조 (생 략)

<신 설>

제16조 (생 략)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해촉) 시장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제17조(분석평가기관) 시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분석평가기관) -----

법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기관
--.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신 설>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5-15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2월 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 조성사업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시 설 명	시설결정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비 고
연구시설	435,017m ²	435,017m ²	연구시설(시험로, 지원동), 녹지 저류지, 도로, 주차장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가. 당 초 : 군산시장(군산시 시청로 17)
(재)전북자동차기술원(군산시 동장산2길 6)
 - 나. 변 경 : (재)전북자동차기술원(군산시 동장산2길 6)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4. 07. 04. ~ 2017. 09.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면적(A)	지분(B)	지분면적(A×B)	성명	주소
				461,662	435,017	-	435,017		
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3	유	4,313	4,313	17/2 0	3,666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4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96	제	3,977	727	17/2 0	618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09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5	구	20,622	20,622	17/2 0	17,529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3,09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6	염	41,349	41,349	17/2 0	35,147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202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7	잡	2,073	2,073	17/2 0	1,762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311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8	잡	902	902	17/2 0	767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35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10	염	48,863	48,863	17/2 0	41,534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7,329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11	잡	5,263	5,263	17/2 0	4,474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789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1-5	유	18,142	18,142	17/2 0	15,421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721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면적(A)	지분(B)	지분면적(A×B)	성명	주소
				461,662	435,017	-	435,017		
10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2-4	제	4,627	2,686	17/2 0	2,283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40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3	도	5,693	5,693	17/2 0	4,839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854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4	제	1,111	1,111	17/2 0	944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6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5	염	46,826	46,826	17/2 0	39,802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7,024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6	잡	1,974	1,974	17/2 0	1,678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96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7	염	45,312	45,312	17/2 0	38,515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79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8	잡	1,967	1,967	17/2 0	1,672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95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9	염	40,684	40,684	17/2 0	34,581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10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8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0	잡	1,993	1,993	17/2 0	1,694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99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면적(A)	지분(B)	지분면적(A×B)	성명	주소
				461,662	435,017	-	435,017		
1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1	잡	2,152	2,152	17/2 0	1,829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32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0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2	염	41,183	41,183	17/2 0	35,006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17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3	염	40,750	40,750	17/2 0	34,638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11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4	잡	2,212	2,212	17/2 0	1,880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332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7	구	7,871	7,871	17/2 0	6,690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181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79-1	도	14,688	1,116	17/2 0	949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6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81-1	제	8,225	343	17/2 0	292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51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5	염	47,012	47,012	17/2 0	39,960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7,052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6	잡	1,878	1,878	17/2 0	1,596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82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군산시 고시 제 2015-158 호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7.

군 산 시 장

1. 고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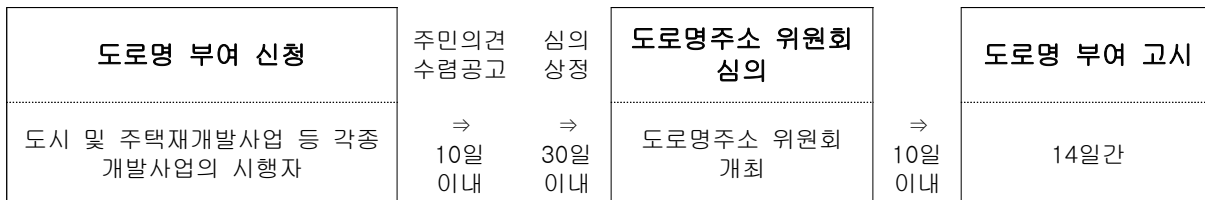
- 도로명 부여 : 1건(월명호수길)

신규 도로명	도로명 부여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기간 : 2015. 12. 7 ~ 12. 20.

3. 도로명 부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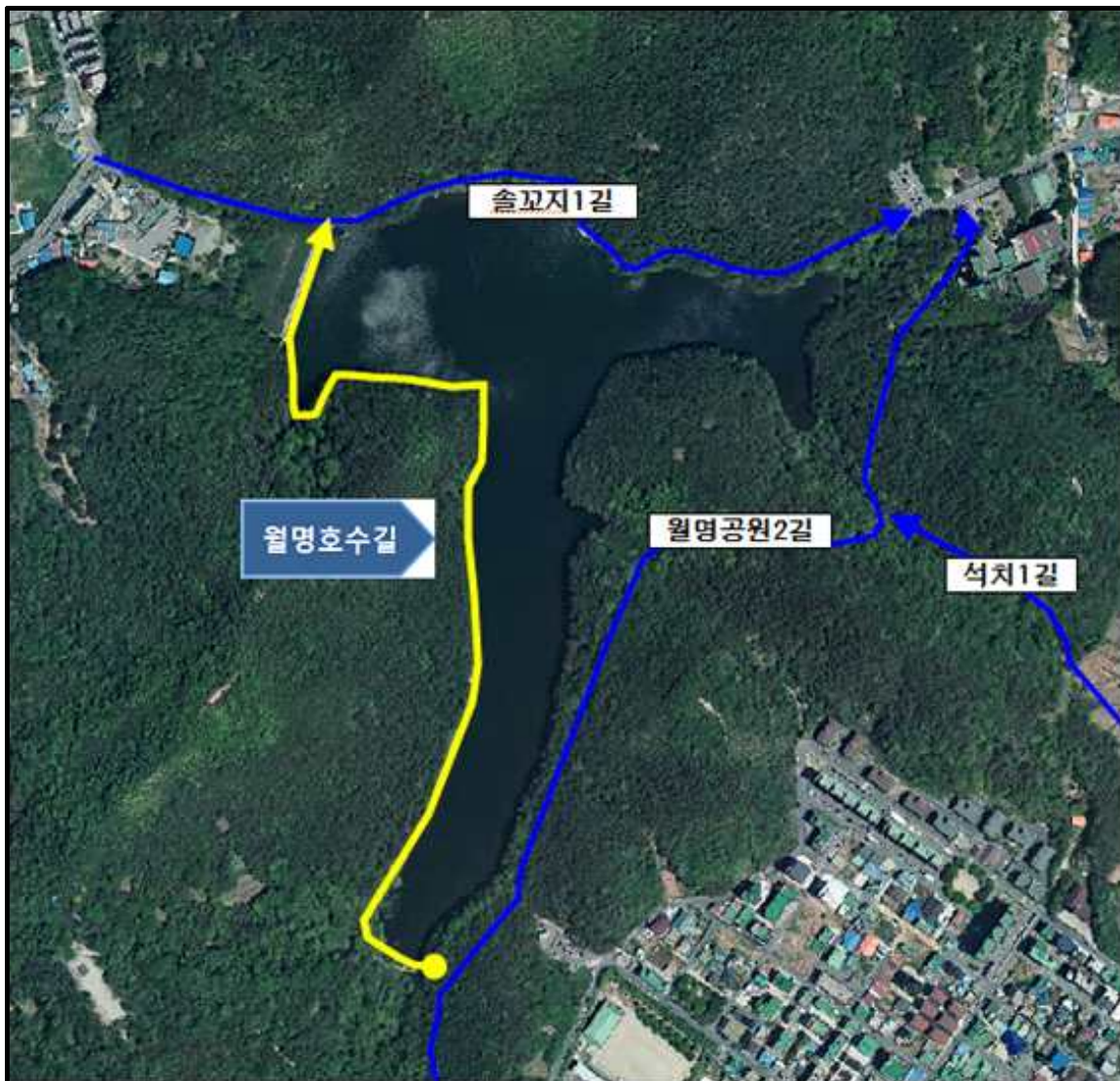


□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면

● 대 상 : 월명호수길

연번	도로명	도로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중심선	관할행정구역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부여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1	월명호수길 (Wolmyeonghosu-gil)	1134	2	길	소룡동 산 120	소룡동 산120	도면 참조	소룡동	20	1→114	월명공원 명칭을 인용하여 부여

●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위치도



군산시 고시 제 2015 - 160호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10.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대지조성사업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식회사성산건설개발
 - 나. 대표자 : 이 인 순
 - 다.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40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산57-3번지의 6필지
 - 나. 사업부지 면적 : 10,124.00㎡
 - 다. 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14필지
 - 라. 사업비 : 1,161,681천원
 - 마. 사업기간 : 2015년 9월 ~ 2017년 7월
4. 설계도서 : 대지조성사업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변경사항 : 공급되는 택지의 필지별 면적 변경 및 우수처리시설 변경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 12. 10.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5-161 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15.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1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변경 : 1건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 로 명 주 소고시일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272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북일길 61-13	20151215	20070528	성산면의 옛 지명은 북일면
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곡리 455-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장길 51	20151215	20070528	옥곡리 신장 마을 소재
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092-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63	20151215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1-1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서로 2(수송동)	20151215	20100125	미장동의 서쪽도로
5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25-8	전라북도 군산시 사전길 20(산북동)	201512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6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89-16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5길 38(수송동)	20151215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7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78-7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223(오식도동)	20151215	20100125	군장산업단지의 동서를 통한하는 중심도로로 지역명칭 및 방향성에서 인용
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622-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호산길 5-24	20151215	20100125	서수리 호산 마을 소재
9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동 288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길 137(개사동)	201512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15-7	전라북도 군산시 상지곡3길 33(지곡동)	201512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37-12	전라북도 군산시 상지곡안3길 26-5(지곡동)	201512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여
1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1-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남로 36-1(수송동)	20151215	20100125	수송택지의 남쪽도로로 수송동에서 인용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 로 명 주 소고시일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13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428-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71-1	20151215	20100125	마을명칭인용
14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428-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71-2	20151215	20100125	마을명칭인용
1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428-6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71-3	20151215	20100125	마을명칭인용
16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64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6길 115-1(산북동)	201512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61-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3길 33 (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20151210	20150127	도로 신설
18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3-19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2길 14-2(장미동)	2015120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 로 명 주 소고시일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71 (경장동)	전라북도 군산시 백룡3길 2(경장동)	2015120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 2015-162 호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15.

군 산 시 장

1. 고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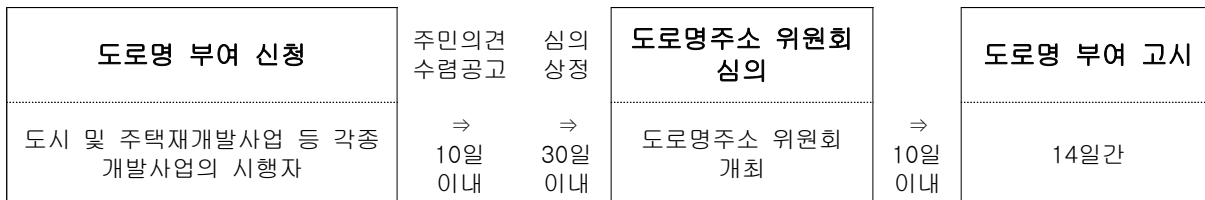
- 도로명 부여 : 1건(은파세바위길)

신규 도로명	도로명 부여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기간 : 2015. 12. 15 ~ 12. 28.

3. 도로명 부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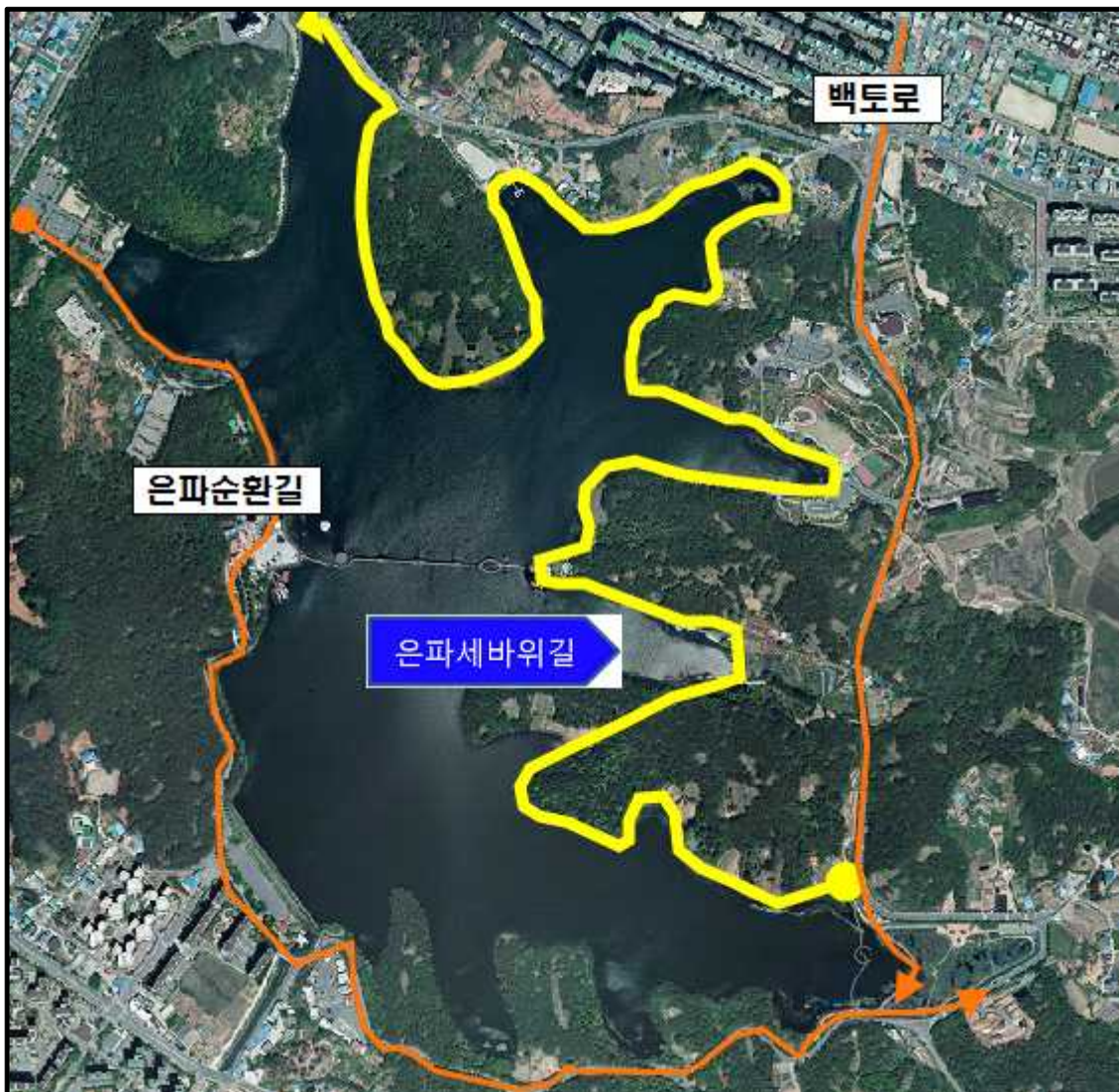


□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면

● 대상 : 월명호수길

연번	도로명	도로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중심선	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부여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1	은파세바위길 (Eunpasebawi-gil)	4,790	3.8	길	지곡동 433-1	나운동 1196-7	도면 참조	지곡동 나운동	20	1→480	은파호수공원의 세바위 전설을 인용하여 부여

●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위치도



군산시 공고 제2015-184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실내배드민턴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1-73호(2011.11.04.)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시행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군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수송동 701-1번지 일원(새들공원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구 분	시 설 명	실시계획인가	공사완료	비 고
공간사업	새들공원 (근린공원6)	4,591m ²	4,591m ²	

- 1)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3,246.39m², 건축연면적 6,553.56m²
- 2) 사업내용 : 배드민턴 15면, 화장실 등 부대편의시설

라.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마. 사업기간 : 2011. 11. 4. ~ 2015. 7. 13.

바.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 비치)